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문화체육과)

| | |
|-------|---------------------------|
| 의안번호 | 제 225 호 |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2023. 11. 7.) |
| 의 안 명 |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검 토 |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나.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및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문화 행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의 문화예술을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도서관운영 및 관리, 아리랑시네센터 운영 및 영상미디어 사업, 성북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²⁾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³⁾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도 출연금은 정규직 총 인건비, 신규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35.11 %인 9억537만원이 증액된 34억8,392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것임.

3)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